## 폐기물 처리계획(변경)서

※ 뒤쪽의 직	낙성병	<b>)</b> 법을 읽고 작성	하시기 브	바라며, [	]에는 해딩	당되는 곳에	√표를 합	니다.				( 앞쪽)			
접수번호			접수일					처리기긴	<u>!</u> 5	[일					
		① 상호(명칭	3)		자등록	번호									
제출인		③ 성명(대표자)						④ 생년월일							
		⑤ 주소(사업	십장) (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:					, 전화번호: )							
		⑥ 업종													
폐기물 <sup>년</sup> 출사업정		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(톤/년)						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(톤/년)							
현황		⑨ 제조공정													
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(톤/년)															
⑩ 폐/물 종류			(12) H	배출량	13 배출	14 성질	⑤ 운반계획		⑥ 처리계획						
	⑪ 분류번호		kg/월	톤/년	주기	・상태	운반자	운반량	처리 구분	업소명	처리 방법	처리량 (톤/년)			
⑪ 폐기물 운반방법			[]자가				[ ]위탁(업소명: )				)				
® 의료펴 기관 <sup>-</sup>															
		리법」 제172 I서를 제출합		• 제6항	및 같은 '	법 시행규	칙 제18.	조의2제4	4항•제	7항에 [[	나라 폐	기물 처			
										년	월	일			
제출인											(서명	또는 인)			
시・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															

첨부서류	1. 수탁처리능력확인서(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<b></b>
	Z. 한성대통을 복단을 干 쓰는 사파(페기를 지다계복을 한당하는 당부단 해당합니다)	수수료
담당 공무원	1. 폐기물처리업 허가증	없음
확인사항	2.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	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 작성방법

- 1. ⑤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「산업입지법」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을 적습니다.
- 2.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(세세분류)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.
- 3.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 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, 원료·부원료·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합니다.
- 4. ⑩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, 의료폐기물인 경우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습니다.
- 5. ⑪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.
- 6. ⑱란은 배출주기를 일별·월별·계절별로 구분하여 적고,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. (예시) 1회/월, 수시, 3~7월 등
- 7.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"고상"으로, 액체상태이면 "액상"으로,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(철제드럼·폴리에틸렌용기 등)는 "기타"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8. ⑯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"자가"로, 위탁운반의 경우는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습니다.
- 9. (6)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"자가"로, 위탁처리의 경우는 "위탁"으로 적고,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.
- 10. ⑱란은 의료폐기물인 경우에만 작성하되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·검사기관 등으로 그부하여 저소니다.

